

 교육부				<h1>해명자료</h1> <p>2019. 12. 15. (일) 배포</p>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	담당자	팀 장 사무관	최화식 (☎ 044-203-6020) 정예영 (☎ 044-203-6928)	

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(각종학교)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.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연합뉴스(장우리 기자), 중앙일보(김지혜 기자), 부산일보(박정미 기자) 등/ '19. 12. 15. [일]
- 제목 :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(전 겸임교수) 사망 ... “강사법 이후 해고통보” , 강사법에 일 잃어 ...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,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 ... 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>

- 한국예술종합학교(문화체육관광부 소관)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7호의 ‘각종학교’에 해당하며,
 -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 없는 전문가 임용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유연한 교원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※ (고등교육법 제14조) ① 학교(각종학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.
 -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·부교수·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.
 -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.
 -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, 직원 및 조교(이하 “교직원”이라 한다)를 둔다.

○ 이에 따라 한예종은 「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임용규정」에서 ‘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’은 학위가 없어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,

- 2019학년도 2학기 강사 1차 모집공고(6.11.)시에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 모집, 2차 추가공고(8.1.)시에는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하였고, 2019학년도 2학기 현재 학위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강사가 채용되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며,

※ (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임용규정) ① 강사는 교육 및 연구(실기)경력이 대학졸업자는 2년 이상,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
2. 교과목의 특성상 교육 및 연구(실기)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

○ 이와 관련하여 한예종에서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일반대·전문대의 경우에도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서 대학졸업자(또는 동등자격자)와 전문대학졸업자(또는 동등자격자)가 일정한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연수 합계 충족 시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,

○ 강사법 시행으로 새로이 교원에 포함된 ‘강사’의 경우 대학졸업자(또는 동등자격자)는 교육·연구경력 합계 2년 이상, 전문대학졸업자(또는 동등자격자)는 교육·연구경력 합계 3년 이상이면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,

○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‘석사

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'는 내용은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.

□ 아울러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'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'을 초빙교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(시행령 제7조 제3호) 초빙교원 등: 법 제16조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

○ 따라서 관련 분야에 전문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학위가 없더라도 초빙교원 및 기타 비전임교원(객원교수, 특임교수 등)으로 자율적인 임용이 가능합니다.

《 참고 :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합의안('18.8.) 》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 제3호(초빙교원 등)의 경우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므로 학위가 없는 경우에도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'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'로 한정하지 않고 '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'(예를 들면, 명장, 명창, 무형문화재, 기술인 등)까지 확대하여 규정함.